

저축  
기능



● 금리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안정

보증기간	5년이하	5년~10년	10년초과
최저보증이율	1.25%	1.0%	0.5%

● 비과세 혜택

-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
- 비과세 해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

● 유연한 자금 활용 중도인출 가능!

- 가입 6개월 후부터, 연12회,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%이내

유의사항	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각 중도인출금의 총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
	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

● 추가적립으로 복리효과 증대

- 가입 6개월 후부터,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% × 가입경과년수 :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액 + 중도인출 금액

유의사항	추가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●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

-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

가능시점	보험계약일로부터	5년납	7년납	10년납
		3년경과시	4년경과시	5년경과시

플랜별 담보별 유의사항

- 한번의 사고에 의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0%(단,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는 80%이상) 및 피보험자 사망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, 회사는 그때까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(적립금)을 지급합니다.
-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화재손해(실손보상, 비례보상), 화재벌금(실손), 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(실손), 거주일상 생활배상책임(주택내화재배상 제외)(실손), 주택화재임시거주비(4일이상)(실손), 주택건물(화재)복구비용지원(실손) 담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.
- 회사가 정하는 기준(가입나이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).
-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,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알아두실내용

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6-971호(2016.12.27)

■ 청약시 주의사항

-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인 작성하고 서명본에도 보험계약자 본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 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
-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인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. (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꼭 보관하십시오)

■ 계약 전 알릴의무

·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■ 계약 후 알릴의무

·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■ 청약철회

· 계약자는 보험증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청약의 철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※ 계약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 
※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빙키슈랑스 부조리 신고

· 금융기관내라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,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· 금융감독원 (tel : 국번없이 1332, 홈페이지 : www.fss.or.kr)

■ 적용이율

- 보장부분 적용이율 - 연복리 2.5%
- 적립부분 적용이율 - 저축성공시이율 1701

※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, 보증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)이나 사고보통금에 7억 7천만원을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■ 해지환급금 예시표 (기준 : 주택실속플랜 아파트, 화재손해 1,000만원, 화재상 100㎡, 건물공수 1억, 월납 10만원, 5년납 10,500원 12회, 월)

경과년수	납입보험료	최저보증이율		Mini(공시이율, 평균공시이율)		공시이율	
		환급금	환급률	환급금	환급률	환급금	환급률
1년	1,200,000	1,099,820	91.7%	1,106,780	92.2%	1,106,780	92.2%
3년	3,600,000	3,409,140	94.7%	3,469,810	96.4%	3,469,810	96.4%
5년	6,000,000	5,776,320	96.3%	5,946,980	99.1%	5,946,980	99.1%
7년	6,000,000	5,888,550	98.1%	6,231,720	103.9%	6,231,720	103.9%
10년	6,000,000	6,060,920	101.0%	6,684,930	111.4%	6,684,930	111.4%

- ※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며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상기 예산지환급금은 적립부분과 보장부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.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통리(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비용비 차감한 금액)를 최저보증이율, 저축성공시이율 1701(2.4% 적용예시), 평균공시이율 1701(3.0% 적용예시)와 저축성공시이율 1701(2.4% 적용예시) 중 적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 실제 해지시에는 저축성공시이율 1701을 적용하며,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,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에 따른 편차범위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.
- ※ 상기 예산 해지환급금이나 환급율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, 계약내용 변경, 보험료납입유예, 보험료 상납일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 상기 예산 금액은 세전기준으로,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함입니다.
- ※ 상기 예산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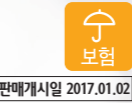
판매사 KEB 하나은행 | 보험사 동부화재

상담 및 문의전화 www.idongbu.com | 고객센터센터 (지역번호없이) 1688-0100 | 보상연속 (지역번호없이) 1588-0100

고객행복을 위한 동부화재의 약속 - 행복 약속 365 | 동부화재는 신속·친절·정확·특별·자유의 다섯 가지 약속을 통해 고객 한분 한분을 1년 365일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보살핍니다.

제작부서 : 빙키지원파트 (2016.12) | 관리번호 : P-2167-1612-0027

(무)프로미라이프  
화재저축보험<sup>1701</sup>



“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”  
행복한 우리집



보험사 동부화재 | 판매사 KEB 하나은행

동 상품권 KEB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동부화재 "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"입니다.

화재  
보장



- 화재손해 실손 보상
  - 주택 및 사업장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(공장물건 제외)
- 주택화재임시거주비 실손보상 (주택플랜, 주택실속플랜만 보장)
  - 최대 870만원 보장(3일초과 1일당 10만원 한도)
  - 화재, 폭발·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보상
- 주택건물복구비용 실손보장 (주택플랜만 보장)
  - 화재, 폭발·파열로 손해가 생길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

예시	주택건물(화재 복구비용지원(실손))	재조달가액	보험가액 (손해가 발생한 한 때와 곳의 가액)	보상금액
금액	2천만원	1억 5천만원	1억원	2천만원
	1천만원	7천만원	5천만원	1천만원
	1천만원	5천만원	5천만원	0원

※ 재조달가액 : 보험의 목적물을 등등한 것으로 취득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비용

- 화재에 대한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동시에 보장
  - 주택플랜, 주택실속플랜 : 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(실손) 대물 10억 / 대인 1억한도 보장
  - 공장플랜 : 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(실손) 대물 3억 / 대인 1억한도 보장
  - 화재벌금 :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(주택실속플랜 제외)

2015년 화재발생 **44,435**건 ↑  
연간 재산피해 **4천억**↑  
(단위 : 백만/명, 2015년)

화재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 
우리집 화재 대비는 화재저축보험으로 든든하게 지키세요!

재산피해액	사망	부상
433,165	253	1,837

자료출처 : 국민안전처-화재통계

가입안내

보험기간	6년, 7년, 10년, 12년, 15년만기
납입기간	5년, 7년, 10년, 12년납, 일시납 (전 보험 기간 전가납 없음)
납입주기	월납, 일시납
적용이율	적립부분 : 저축성 공시이율 1701
	보장부분 : 연복리 2.5%
가입연령	피보험자기준 만 15세이상 (주택실속플랜 제외)

# 주택실속 플랜

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!

### 보장내용 주택실손

화재손해 (실손보상)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(건물, 가재도구)	<b>가입금액</b> 한도
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(잔존물제거비용)	화재손해액의 <b>10%</b> 한도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(실손)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(자기부담금 없음)	대물 <b>10억</b> 원 한도 대인 <b>1억</b> 원 한도
화상진단비	상해 화상 진단시 (1사고당)	<b>10만원</b>
주택화재임시거주비 (4일이상)(실손)	화재, 폭발·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시 (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)	<b>10만원</b> 한도

※ 화재손해(실손보상)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

※ 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(실손) : 대물 10억원 한도,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, 후유장애 최고 1억원,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(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)

만15세 이상

# 주택 플랜

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!

### 보장내용 주택실손

화재손해(실손보상)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(건물, 가재도구)	<b>가입금액</b> 한도
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 비용 발생시 (잔존물제거비용)	화재손해액의 <b>10%</b> 한도
화재별급(실손)	행법 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2,000만원</b> 한도
	행법 170조(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1,500만원</b> 한도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(실손)	화재, 폭발·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(자기부담금 없음)	대물 <b>10억</b> 원 한도 대인 <b>1억</b> 원 한도
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(주택내화재배상 제외)(실손)	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(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)	<b>1억</b> 원 한도
화상진단비	상해 화상 진단시 (1사고당)	<b>10만원</b>
주택화재임시거주비 (4일이상)(실손)	화재, 폭발·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시 (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)	<b>10만원</b> 한도
주택건물(화재) 복구비용지원(실손)	화재, 폭발·파열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	건물가입금액의 <b>20%</b> 한도

※ 화재손해(실손보상)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

※ 화재(폭발포함)배상책임(실손) : 대물 10억원 한도,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, 후유장애 최고 1억원,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(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)

### 보험료 예시

(기준 : 아파트, 화재손해 1,000만원,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200만원, 건물금수 1급, 월납 단위 : 천원)

구분	5년납		7년납		10년납	
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
6년만기	348	104.4%	-	-	-	-
7년만기	340	105.8%	-	-	-	-
10년만기	76	110.3%	307	109.0%	-	-
12년만기	52	114.6%	75	113.2%	362	111.6%

※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)를 저축성공시(이율 17012.4% 적용)시료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공시이율변동,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, 보험료납입유예, 보험료 납입입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만15세 이상

# 사업장 플랜

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!

### 보장내용 일반실손

화재손해(실손보상)	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(건물, 집기, 시설, 기계, 동산)	<b>가입금액</b> 한도
	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(잔존물제거비용)	화재손해액의 <b>10%</b> 한도
화재별급(실손)	행법 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2,000만원</b> 한도
	행법 170조(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1,500만원</b> 한도
화상진단비	상해 화상 진단시 (1사고당)	<b>10만원</b>

※ 화재손해(실손보상)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하며, 최대 가입금액은 동산 2억원 한도, 동산제한 10억원 한도임

### 보장내용 일반비례

화재손해(비례보상)	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(건물, 집기, 시설, 기계, 동산)	<b>가입금액</b> 한도
	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(잔존물제거비용)	화재손해액의 <b>10%</b> 한도
화재별급(실손)	행법 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2,000만원</b> 한도
	행법 170조(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1,500만원</b> 한도
화상진단비	상해 화상 진단시 (1사고당)	<b>10만원</b>

※ 화재손해(비례보상)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

### 보험료 예시

(기준 : 일반업무시설, 화재손해(실손보상) 1억원, 건물금수 1급, 월납 단위 : 천원)

구분	5년납		7년납		10년납	
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
6년만기	623	104.4%	-	-	-	-
7년만기	567	105.8%	-	-	-	-
10년만기	360	110.3%	426	109.0%	-	-
12년만기	318	114.5%	350	113.2%	474	111.6%

※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)를 저축성공시(이율 17012.4% 적용)시료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공시이율변동,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, 보험료납입유예, 보험료 납입입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만15세 이상

# 공장 플랜

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!

### 보장내용 공장비례

화재손해(비례보상)	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(건물, 집기, 시설, 기계, 동산)	<b>가입금액</b> 한도
	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(잔존물제거비용)	화재손해액의 <b>10%</b> 한도
화재별급(실손)	행법 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2,000만원</b> 한도
	행법 170조(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)	<b>1,500만원</b> 한도
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(실손)	화재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(자기부담금 없음)	대물 <b>3억</b> 원 한도 대인 <b>1억</b> 원 한도

※ 화재손해(비례보상)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

※ 화재배상책임(실손) : 대물 3억원 한도,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, 후유장애 최고 1억원,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(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)

### 보험료 예시

(기준 : 금속가공, 화재배상 100㎡, 화재손해 (건물/동산) 각 1억원, 건물금수 1급, 월납, 단위 : 천원)

구분	5년납		7년납		10년납	
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	납입보험료	만기환급률
6년만기	2,458	104.4%	-	-	-	-
7년만기	2,051	105.8%	-	-	-	-
10년만기	1,180	110.3%	1,233	109.0%	-	-
12년만기	1,075	114.5%	1,037	113.2%	1,234	111.6%

※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부분 영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)를 저축성공시(이율 17012.4% 적용)시료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, 향후 공시이율변동,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, 보험료납입유예, 보험료 납입입지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 건물 구조급별 정리

급별	구조	지붕(틀)	기둥	외벽
1급	내화구조	내화구조	내화구조	내화구조
2급	불연재료	내화구조	내화구조	내화구조
3급	불연재료	불연재료	불연재료	불연재료
4급			상기 이외의 것	

- 내화구조**  
불에 강하고 불이 붙어도 모양의 변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. 인접화재로 연소 우려가 적고 화재 시 내부가 탄 후에도 내력상 지장 없이 간단한 수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. (콘크리트, 벽돌, 석조 등)
- 불연재료**  
불에 타지는 않으나 일정온도 도달 시 모양 변형/붕괴되는 구조. (철강, 알루미늄, 유리, 모르타르 등)

## FAQ

### · 화재손해 실손보상

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·피난손해 발생한 경우 보상 (전용주택 및 전용주택내 수용가제일 경우에는 폭발·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)

▶ 화재 실손손해 예시 ※ 화재손해(비례보상) 지급보험금 산정은 실제손해액 × 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의 80% 적용

구분	보험가액	보험가입금액	실제손해액	지급보험금
화재손해(실손보상)	1억 2,500만원	5,000만원	5,000만원	3,000만원
화재손해(비례보상)	1억 2,500만원	5,000만원	5,000만원	2,500만원

### · 화재별급 실손

행법 제170조(실화) 또는 제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보상

▶ 행법 제170조(실화)에 의한 벌금 : 1,500만원 한도

▶ 행법 제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의한 벌금 : 2,000만원 한도

### · 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 실손

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담보이해

- 건 물**  
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가, 작업, 집회, 오락,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
-부 속 물 : 칸막이, 대문, 담 등  
-부 착 물 : 간판, 내은싸인, 안테나 등  
-부속설비 : 전기, 통신, 가스, 냉·난방 등
- 집기비품**  
작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것 등
- 시 설**  
건물의 골격, 벽, 바닥 등에 치장, 내·외부 마감재료 등 건물의 구조에 영향없이 채설치가 가능한 것 등
- 기 계**  
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장치(연소장치, 냉방장치)
- 동 산**  
상품, 전술품, 반차재, 완제품 등
- 가재도구**  
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전 및 가구 등